



Sep. 2018 **발간년월** 2018년 09월(통권 제10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**발행인** 양창호 원장
Vol. 10 **감리** 황진희 본부장 **자료문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**홈페이지** www.kmi.re.kr

금주 Contents - 해양환경 이슈

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관련 협약 강화 전조 보여

IMO는 UN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BBNJ와의 관련성 제시^{a)}

■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(BBNJ¹⁾)

-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²⁾(ABNJ)은 주로 공해와 심해저를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 국가관할권에 속한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칭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임
- 이러한 ABNJ는 지구 표면적의 40%, 해양면적의 64%, 그리고 부피자체로는 해양의 95%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, 이러한 ABNJ는 해양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물다양성과 그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함
- 특히 심해저 및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의 경우 환경의 특수성과 육지와의 거리 때문에 몇몇 선진국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향후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큼
- 그러므로 BBNJ는 현재 환경보호 원칙의 트렌드인 사전예방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음

■ 2018년 9월 7일~ 17일 뉴욕에서 열린 UN 해양 회의에서 IMO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과 시스템 소개

- IMO 환경협약 담당자(Technical Officer)인 Fredrik Haag는 50개 이상의 강제 협약들을 통해 해상운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IMO의 경험과 시스템을 설명함
- Fredrik Haag는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새로운 협약이 기존 국제 협약 혹은 지역 협약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

1)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(BBNJ :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)

2)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(ABNJ :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)

- 또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, 특별민감해역³⁾, 런던협약⁴⁾ 및 의정서⁵⁾,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(Polar Code), 수중 선박 소음에 대한 IMO의 규제 등을 소개하였음 ^{b)}
- 특히, Polar Code의 Part II-A는 기름오염 방지,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,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,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쓰레기에 의한 오염방지 등을 포함하여 MARPOL과 유사함
- Polar Code의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 방지 부분이 MARPOL과 유사한 이유는 극지방의 해양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극지생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큼

■ BBNJ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

- UN 총회는 2017년 12월 24일 UN결의 72/249에 의하여 UN이 후원하는 정부간 회의를 지난 9월에 개최했으며, BBNJ를 위한 협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발하고자 함
- 총회에서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제1차 회의는 2018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었으며, 추후 2019년(제2차 및 제3차), 2020년 상반기(제4차)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
- 해당 회의를 거쳐 BBNJ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개발되어 2020년 후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

해양생명 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

■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존

- 동 법의 목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·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

3) 생태학적이나 사회 경제 및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해역(PSSA: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)

4) 협약의 공식명칭은 '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'(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: London Convention)이다.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어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.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주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국,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해양오염문제관련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, 1993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(1994년 1월 발효)하였다. 동 협약은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, 항공기,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대상으로 한다.

5) 1972년 이후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미비로 인한 협약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협약전반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대두, 수차례의 협약 개정그룹회의를 거쳐 1996년 10월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다. 동 개정의정서는 종래의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을 부속서에 규정하는 negative system에서 부속서에 규정된 물질 외에는 투기하지 못하는 positive system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하고, 런던협약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내해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이 의정서 관련 조항을 적용, 투기 또는 해상소각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 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한편, 분쟁해결 절차 및 책임과 배상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, 런던협약의 내용을 전면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. 군함 등에 대한 동 개정의정서의 적용은 배제되며, 관련 당사국의 자발적 의정서 적용을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권면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.

- 동 법 제3조의 기본이념에는 「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오야 의정서」 및 지속가능한 확보·관리 및 이용되어함을 천명하였으나,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보존 언급은 전무함

■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존

- 동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·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「생물다양성협약」의 이행하기 위한 제정 목적을 두고 있음.
- 제2장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라는 조항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보존에 목적이 있으나,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서는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를 통해 목록을 구축하고 해당 생물의 이익을 공유하는 조항을 둘으로써 보호와 보전보다는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조항이 보전의 조항보다 많음
- 또한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하여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음. 우리나라 법령이므로 당연히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역까지이므로 국가 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조항은 미흡함

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존

- 동 법은 해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관리하여 해양오염을 예방, 개선,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,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와 관련한 모법 역할을 하고 있어 IMO 국제협약에서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협약을 일부 수용하고 있음
-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조항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에 필요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생물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음
- 그러나 동 법은 환경관리해역 외에는 해양생물의 보존에 관한 조항이 미흡하며 주로 지속가능한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있음

■ 「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존

- 동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·보존·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
-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게 됨
 - 해양생물자원의 수집, 보존, 관리 및 전시
 - 해양생물자원의 조사, 연구

-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
-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
-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, 수탁, 등록, 보존, 관리, 이용 및 평가
-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- 동 자원관의 설립목적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이지만 수행 사업을 확인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목적이 더 큼을 알 수 있음
- 그러나 현재 해양생물자원관의 기관 고유 사업의 내용을 보면, 국가잔잔화사업 및 가치창출사업으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중이며, 보호나 보전 보다는 해양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가 더 많이 진행중임

■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

- UN이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협약을 2020년 후반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UN의 산하 기관인 IMO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해양생물 보전과 관련한 협약의 발전을 가져올 것임
- 특히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「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으나, 기존의 법률과 유사하게 ‘활용’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
- 우리나라는 국내의 해양생물 보전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향후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역시 준비해야할 것임

허성례 연구원

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(srhu0201@kmi.re.kr / 051-797-4624)

참고자료

- a) 조아영, “BBNJ에 대한 논의 내용과 그 함의”, Vol.39 No.3, 2017, 한국환경법학회
- b) <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637138&cid=42143&categoryId=42143>(2018.9.9
검색)